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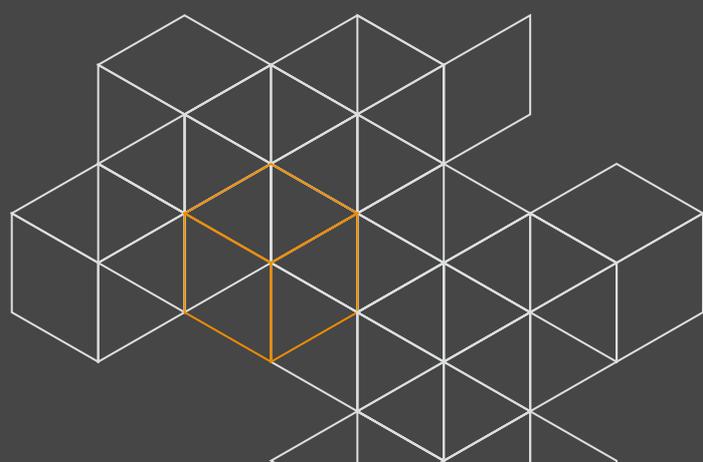


PwC 베트남 뉴스레터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문



www.pwc.com/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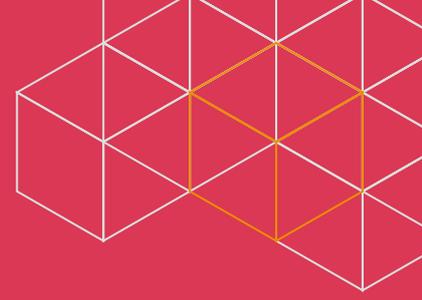


At a glance

8월 16일자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하여 국회는 11월 29일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 결의안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세부 사항



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결의안은 11월 29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결정문에는 베트남이 적격국내최저한세 (“QDMTT”) 및 소득산입규칙 (“IIR”)을 도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많은 국가들도(예: 일본, 한국 등) 2024년부터 IIR를 도입하겠다고 공개한 점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더 많은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 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이는 베트남 사업에 상당한 투명성과 확실성을 가져다줍니다.

IIR 및 QDMTT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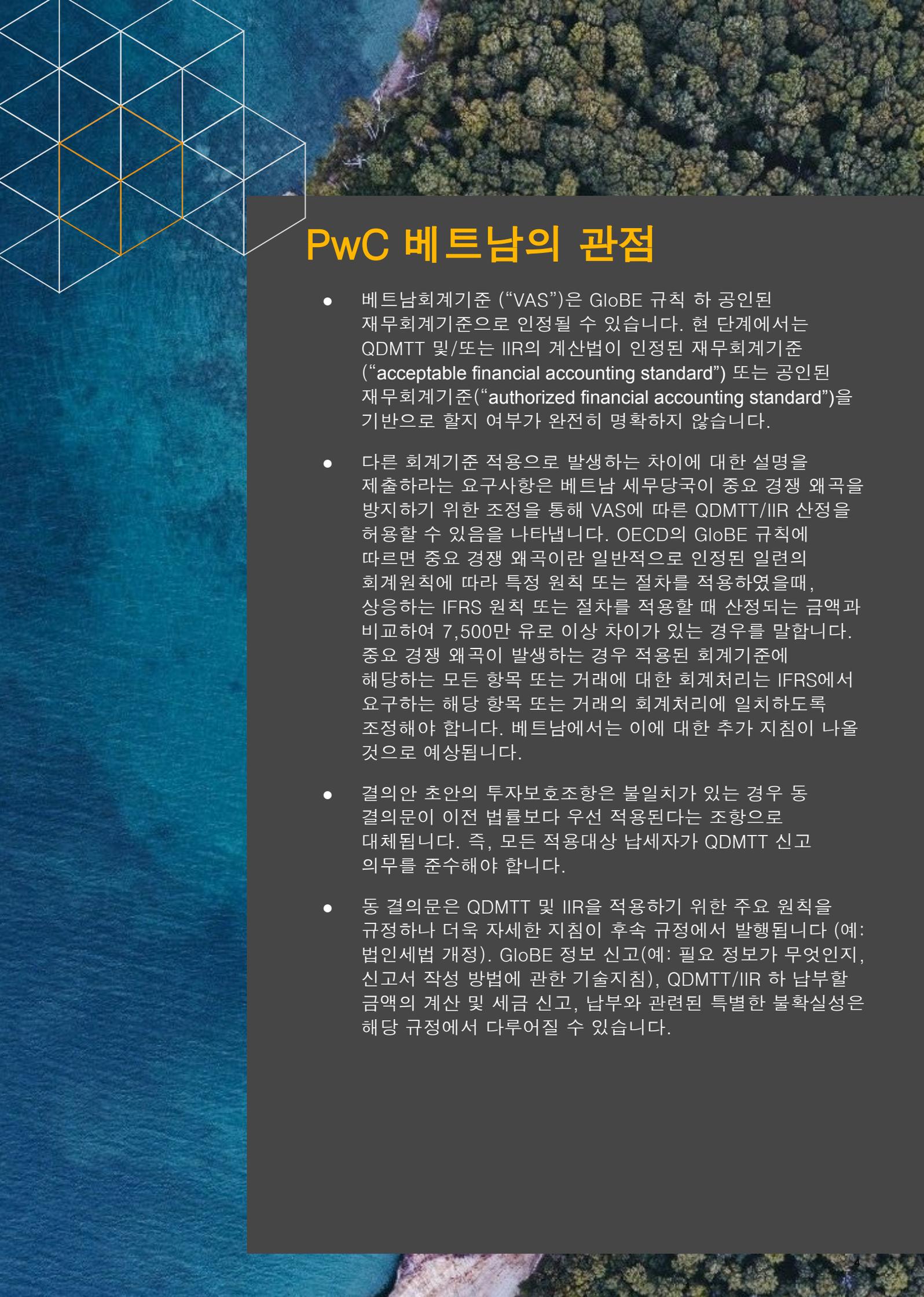
2023년 8월 1일자 뉴스레터에 언급한 OECD의 글로벌 세원잠식방지(“GloBE”)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배분되는 법인세와는 달리 추가세는 중앙정부 예산에 납부됩니다.

세금 신고 의무

- 적용대상 납세자는 GloBE 정보 신고, 보충 법인세 신고 및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이는 OECD 지침에 언급된 중요 경쟁 왜곡 (“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 장의 PwC 관점 세션을 참고하십시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QDMTT: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IIR: 적용대상 첫해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에는 15개월 이내
- 납세기한은 세금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세이프하버 및 페널티 면제

- 결의문은 OECD의 GloBE 규칙과 동일한 전환 국가별 보고서 (“CbCR”) 세이프하버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전환 기간 동안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QDMTT 및 IIR 규칙 하 관할권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다국적 기업그룹이 한 회계연도에 적격 CbCR 상 해당 관할권에서 창출한 총 매출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며 세전손익이 100만 유로 미만이거나 적자상태인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다국적 기업그룹이 해당 회계연도의 특정률 이상의 간이 실효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특정율은 2023~2024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5%; 2025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6%; 2026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17%입니다.
 - 해당 관할권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전손익이 GloBE 규칙 하 산정된 CbCR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 주재하는 구성기업의 실질 기반 적용제외 소득 이하인 경우.
- 전환 페널티 면제: 전환 기간 동안 세금신고와 관련된 행정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결의문에는 연체이자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PwC 베트남의 관점

- 베트남회계기준 (“VAS”)은 GloBE 규칙 하 공인된 재무회계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QDMTT 및/또는 IIR의 계산법이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또는 공인된 재무회계기준 (“authoriz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을 기반으로 할지 여부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 다른 회계기준 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은 베트남 세무당국이 중요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을 통해 VAS에 따른 QDMTT/IIR 산정을 허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OECD의 GloBE 규칙에 따르면 중요 경쟁 왜곡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련의 회계원칙에 따라 특정 원칙 또는 절차를 적용하였을 때, 상응하는 IFRS 원칙 또는 절차를 적용할 때 산정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7,500만 유로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 경쟁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또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에서 요구하는 해당 항목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의안 초안의 투자보호조항은 불일치가 있는 경우 동 결의문이 이전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즉, 모든 적용대상 납세자가 QDMTT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동 결의문은 QDMTT 및 IIR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원칙을 규정하나 더욱 자세한 지침이 후속 규정에서 발행됩니다 (예: 법인세법 개정). GloBE 정보 신고(예: 필요 정보가 무엇인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QDMTT/IIR 하 납부할 금액의 계산 및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된 특별한 불확실성은 해당 규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hiem Hoang Lan

Partner

nghiem.hoang.lan@pwc.com



우정균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jung.kyun.woo@pwc.com



Richard Irwin

Partner

r.j.irwin@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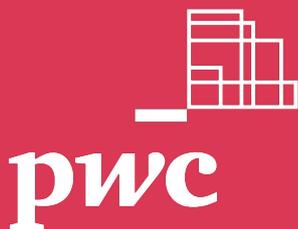


박준형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park.junhyung@pwc.com



www.pwc.com/vn

